

# 201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발행자**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홍철호 부패영향분석과장  
윤남기 팀장  
김도희, 이원철, 김영욱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2동)  
**전화** (044) 200-7663 FAX : (044) 200-7941  
**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디자인\*제작 : 중앙기획 (02) 737-1610



## 들어가는 말

2014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통한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위탁·대행 분야 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행법령 상 고질적·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취약분야의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및 관행화된 재정누수 유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청소년수련 시설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선정된 과제들의 제반 운영현황 및 세부 문제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전수조사 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의 발굴과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포함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부터 자치 법규까지의 수직적 분석과 직접 근거 법령으로부터 유사분야를 포괄하는 법령까지의 수평적 분석 등 교차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4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수막(옥외광고물) 게시대 사용 시 부과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편의적인 징수 등 불합리한 관련 규정과 게시대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방안과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및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6가지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2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부실에 따른 대행료 허위청구, 근로자 임금 편취, 특정업체와의 장기계약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대행료 부당청구 환수 규정 마련 등 예산·계약·평가·사후 관리에 대한 6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문제점의 개선과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시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와 선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는 물론, 부실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부실 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 8가지 개선권고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안전 및 운영관리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육성 활성화 제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청렴이 국가 경쟁력이란 신념으로 반부패·청렴을 사회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상에 존재하는 각종 비리와 부패유발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기관과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b>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b> .....	<b>009</b>
1. 추진 배경 .....	010
2.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관리 현황 .....	011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014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015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16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035
<b>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b> .....	<b>037</b>
1. 추진 배경 .....	038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현황 .....	039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04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046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47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069
<b>III.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b> ...	<b>073</b>
1. 추진 배경 .....	074
2. 청소년수련시설 제도 및 운영현황 .....	076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08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085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86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114
<b>부록1.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b> .....	<b>118</b>
<b>부록2.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b> .....	<b>144</b>

201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010
2.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관리 현황	011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014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015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016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035

---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추진 과제 : 부패척결을 위한 3대 전략, 5대 핵심분야 중 '반복적 민생비리'
- ◆ 브랜드과제 :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의 해소 중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을 설치

○ 게시시설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저비용·고효율 상업광고 이용에 크게 기여하며, 전국 227개 지자체에서 12,958개 게시시설을 설치·운영

- ▶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행정 효율 증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27개 중 138개(61%)의 지자체가 위탁으로 관리
- ➔ 연간 188억원의 세수확보와 7백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그러나, 관련규정의 미비와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되는 실정

○ 수탁자의 수수료 편취 및 특혜 부여 등 위탁 관련한 부패가 지속 발생하고, 불편 민원 발생량과 불법 정비량은 매년 급증

-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 대두

❑ 또한, 정당한 반환 사유를 불문하고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 초래

❑ 따라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당한 부담을 해소



## 2.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 · 관리 현황

### 01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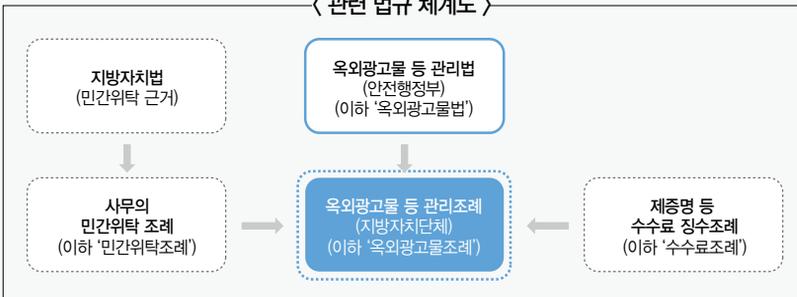
#### ■ 개념

-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표시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 인·허가를 받는 시설물
  - 옥외광고물은 공공 및 상업광고물로 구분되고, 설치 형태에 따라 16종 (고정 13종 : 간판 · 선전탑 등, 유동 3종 : 현수막 · 벽보 · 전단지)으로 분류

#### ■ 법령체계

- 안전행정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조례)로 규정
  - (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시행령 (안행부)
    - \* 옥외광고물의 허가 · 신고, 표시방법, 금지 또는 제한사항, 수수료 및 벌칙 등
  - (자치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시행규칙 (지자체별)
    - \* 지자체 옥외광고물의 신고수리 및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 수수료 부과 · 징수 등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민간위탁기본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제반 사항을 규정

〈 관련 법규 체계도 〉



⇒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옥외광고물조례' 중심으로 평가 (민간위탁 및 수수료조례를 참고하여 옥외광고물조례를 보완 · 정비)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 02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규모 현황

### ■ 광고물 게시시설 및 시장 규모

- 전국의 지자체 244개 중 227개(93%) 기관이 12,958개(73,037면)의 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중임
  - ※ 서울 〇〇구와 〇〇구는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현수막 인 · 허가 업무 폐지('08년)
- 연간 현수막 신고 수리 128만여건, 신고수수료 188억원을 포함한 약 7백억원의 지역 광고시장 형성

## 03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 · 관리체계

### ■ 옥외광고물의 신고 · 수리 절차

- 신고 · 수리 절차는 민원인이 수탁자에게 사전 접수하면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계침자를 선정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가 수리하면 옥외광고물 계침

〈 위탁방식의 게시시설 신고수리 흐름도 〉



- 경쟁과열지역은 사전 접수 · 추천 방식을 도입하여 계침자를 선정, 표시규격 · 문구 등을 확인하고 수수료\* 징수 후, 신고수리

\*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지자체별 3천원~1만원(1매당) 수입증지대 징수

※ 게시시설이 민간위탁인 경우 수탁자가 신고대행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추가 징수하여 게시시설 유지 · 관리 비용 등에 충당



- 옥외광고물의 인·허가는 광고물의 형태, 설치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 신고대상(현수막 등)은 설치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 신고서 제출

## ■ 게시시설의 위탁 및 운영·관리 방식

### ○ (운영·관리 방식) 직영 또는 위탁

- 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관은 총 227개 지자체 중 138개(61%)

〈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직영(A)	위탁(D)		
		소 계	전체 위탁(B)	일부 위탁(C)
227 (100%)	89 (39%)	138 (61%)	111 (49%)	27 (12%)

※ (민간)위탁은 광고물협회(72%), 시설관리공단(10%), 광고업체(13%), 기타(5%) 순

### ○ (위탁근거)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게시시설을 관리 중인 227개 지자체 중 225개 지자체가 위탁근거를 옥외광고물조례로 명시

\* 직영하는 공주시와 상주시는 위탁근거를 두지 않음(부패영향평가 제외)

### ○ (모집방식) 공개경쟁(옥외광고물조례, 민간위탁조례)

- 위탁은 공개경쟁(모집)이 원칙이나, 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관(138개) 중 제한·수의계약 또는 별도 규정 없이 내부방식으로 협약체결하는 경우가 66개(48%)에 해당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14. 1~2월 : 게시시설 운영·관리 민원 및 부패행위 등 사건 조사
- '14. 3~4월 : 게시시설 위탁관리 예비 실태조사
- '14. 3~5월 : 관련 자치법규 등 서면 실태조사
- '14. 6~9월 : 현장 실태조사 및 분석

### ■ 실태조사 개요

-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4. 3. 6. ~ 7. 15. 기간 중
  - 대상기관 : 244개 지자체(광역시+기초) 및 4개 권역, 7개 기초지자체
  - 조사방식 : 게시시설 운영·관리 현황 전수조사, 위·수탁계약 관련 사항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

### ■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수탁자 선정과정 및 계약기간 연장, 사후관리 및 수수료 징수 분야 등
-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직적 분석
  - 계약방법, 민간위탁 및 수수료 징수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수평적 분석

법령체계		주요 내용
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현수막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신고수리 절차와 방법, 신고수수료 부과·징수 등 - 세부 신고수리 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게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게시시설의 설치·관리방법 등 - 게시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
자치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게시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신고수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
	민간위탁관리조례	• 위탁사무 범위, 지방의회 동의, 수탁자 모집기준 및 절차 등 • 수탁자 통제장치 및 제재 규정 등
	수수료징수조례	• 신고수수료 부과·징수·반환 등을 규정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문 제 점

###### 1 부실한 관리 및 관련규정 미비로 수탁자 부정행위 만연

- ①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부실로 수탁자의 부패발생요인 내포
- ② 제재규정 미비 및 미온적 조치로 수탁자의 위법행위 재발

###### 2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투명 · 불공정 및 특혜 시비 상존

- ③ 근거규정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
- ④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 ⑤ 행정편의적 위탁 연장으로 특정인의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초래

###### 3 행정편의적인 수수료 징수 규정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미반환

- ⑥ 신청 취소 등 정당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만 야기

###### 개선방안

###### 1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

- ①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을 통한 부패차단
- ②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제발 방지

###### 2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

- ③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으로 공정 · 투명성 제고
- ④ 내실있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

###### 3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 ⑥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 개선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1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

#### ■ 평가대상 조문

##### 옥외광고물조례

#####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장치】

- 규정 없음 : 217개(96%) 지자체
- 우수 조례 : 없음
- 미흡 조례 : 8개(4%) 지자체

제○조(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위탁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 제재장치】 없음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 문제점

##### 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수탁자의 부패발생요인이 내포

- 대다수의 기관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실로, 수수료 편취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처리 등 부패 상존 - 이로 인해 지방 세수의 누수 및 민원인의 불편 초래

##### 관련 사례

##### 【수탁자의 부정행위】

- ▶ ○○시에서 13년간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중인 △△협회(수탁자)는 '09.1월부터 '13.10월까지 ○○시에 자체 관리 중인 신고 접수대상 보다 적게 신고하여 민원인에게는 신고수수료를 받고, ○○시에는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수수료 40,977천원과 대행수수료 161,176천원을 편취하였으며, 수탁자가 현수막 제작업 까지 겸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총 571,000천원의 불법·부당 수익을 취함 (권익위 실태조사, '14. 4월)



▶○○협회는 실제 게시된 현수막 갯수를 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 빈틈을 악용하여 '12.1월부터 '13.11월까지 24,000천원 상당의 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밝혀짐 (중부일보, '13. 11월)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217개(96%) 기관은 옥외광고물조례에 지도·감독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가 부재
- 위탁조례는 214개(95%)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도 11개(5%))

○○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규정 내용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불분명)
		설정	불분명	설정	불분명	
지도·감독	225 (100%)	8 (4%)	217 (96%)	214 (95%)	11 (5%)	11 (5%)

○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부재는 관리청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제도적 미흡에 따른 부패행위가 지속 유발되는 결과 초래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㉔ 제재규정 미비 및 미온적 조치로 수탁자의 위법행위 재발

- 계약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곤란함으로,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 모두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수탁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 위탁조례는 47개(21%)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없는 경우도 178개(79%))

〈수탁자에 대한 제재장치 규정 현황〉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불분명)
	설정	불분명	설정	불분명	
225 (100%)	0 (0%)	225 (100%)	47 (21%)	178 (79%)	178 (79%)

- 일부(85개, 62%) 지자체의 경우는 수탁계약서에 제재사항을 두고 있으나,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미흡

### 관련 사례

####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시 위·수탁계약서〉

제○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손해배상요구 등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가. 관계법령 및 규정,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나. 현수막계시대 수탁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다.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잦은 민원발생 시에는 별표 1에 의거 처리

〈별표 1〉

주의	경고	해 지
동일내용 3회 이상	주의 3회 이상	경고 3회 이상

⇒ 수탁자가 27회(=위반3×주의3×경고3) 이상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음 (권익위 실태조사, '14. 7월)



▶ ○○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를 '03년부터 ◆◆광고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11. 6월~12월 기간 중 1,150건의 현수막에 대하여 7일간 계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4일 동안 계침하고, 1주일간의 수수료 3백여만원과 대행수수료 9백여만원 총 12백여만원을 편취하다 ○○시에 적발되어 수수료 300백여만원을 납부, 이후에도 부정행위 수탁자에게 계약만료 시까지 계속 위탁 (권익위 실태조사, '14. 3월)

## ■ 개선방안

### ①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을 통한 부패차단

-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 수탁자 관리 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

#### < 예 시 >

- 수탁자의 적절한 사무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검사토록 규정
- 지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정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참고 의견

1. 수탁자의 수수료 편취를 방지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 강구

예) 제 ○조(회계관리) 수탁자는 게시시설 위탁 운영·관리 회계를 특별회계(전용 계좌 △△은행 559-12-003001)로 관리하고 수지정산 보고서, 개인별·월별 현수막 신청·접수내역,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의 필요경비 지출 내역 등을 구분하여 익월 ○일까지 전용계좌 잔고증명 및 입출금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전자카드 등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례적인 지도·감독 외에 수탁자가 예측 불가능한 불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 극대화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㉔ 계약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재발 방지

- 부정한 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위탁의 취소 등) 제재를 통해 부패차단 및 재발 방지

### < 예 시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당연 계약 취소토록 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 취소하도록 규정
- 지도·점검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위탁계약 취소토록 규정
-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 참고 의견

1. 수탁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옥외광고물 신고수리 업무의 공백을 염려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계약의 취소 등)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체 업체를 사전에 확보하여 미온적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2. 수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던 업체 또는 업무종사자는 차기 수탁자 선정 시 적격업체 평가에 반영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b>제○ 조(지도·감독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설〉</p>	<p><b>제○ 조(위탁의 취소 등)</b>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li> <li>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li> <li>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li> <li>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li> <li>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li> </ol>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0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 평가대상 조문

옥외광고물조례

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계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계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25개 지자체에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근거를 두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탁자 선정과정 등 관련 규정이 대부분 위 사례와 같이 미흡함.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㉓ 근거규정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

-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138개) 중 66개(48%) 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공개경쟁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경우		
		소계	제한·수의	규정없이 내부방침
138 (100%)	72 (52%)	66 (48%)	51 (37%)	15 (11%)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 196개(87%) 기관은 광고물조례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이 없으나, 위탁조례는 209개(93%) 기관이 규정에 명시(규정 모두가 없는 경우도 15개)

〈 수탁자 공개모집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 · 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29 (13%)	196 (87%)	209 (93%)	16 (7%)	15 (7%)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sup>1)</sup>을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제처 해석('07.3.23. 07-0044)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탁자의 명칭이 명시된 것만을 의미

## ④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이 불투명

- 대부분의 지자체(219개, 97%)에서 광고물조례에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불투명 초래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 · 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6 (3%)	219 (97%)	209 (93%)	16 (7%)	16 (7%)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또한,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를 규정한 기관(6개, 3%)의 경우에도 위원회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99%) 공정한 심의를 저해

〈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 · 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25 (100%)	2 (1%)	223 (99%)	27 (12%)	198 (88%)	196 (87%)

#### 관련 사례

##### 【위원회의 사적 이해충돌】

- ▶ ○○시는 '12. 2월 2개 업체가 응모한 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회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협회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으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는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지낸 수탁자와 막역한 사이여서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소지도 있었으나 ○○시는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킴 (권익위 실태조사, '14.4월)

#### ㉟ 행정편의적 위탁 연장으로 특정인의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초래

- 옥외광고물조례에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이 없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기존업체와 위탁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 221개(98%) 지자체는 광고물조례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 민간위탁 기관(138개) 중 87개(63%) 기관은 기존업체와 6년 이상 장기계약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수탁자와의 장기 위탁 현황〉

- ▶ ○○시의 경우는 최초 광고물 게시시설이 설치된 1985.5월부터 옥외광고물 협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30여년간 재위탁 중이며, - 6년 이상 장기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는 87개(63%)에 달함

(단위: 지자체수, %)

위탁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38	19	3	7	8	5	5	4	1	27	12	9	9	6	8	8	6	1
0~5년(37%)	51	11	-	1	7	1	3	-	-	7	4	4	1	2	4	4	2	-
6~10년(29%)	40	7	1	1	-	4	2	-	1	5	5	2	3	3	1	2	3	-
11~15년(24%)	33	1	2	5	1	-	-	4	-	4	2	3	5	1	2	1	1	1
16~30년(10%)	14	-	-	-	-	-	-	-	-	11	1	-	-	-	1	1	-	-

## 관련 사례

### 【행정기관 편의적으로 위탁 연장이 가능토록 계약】

- ▶ 7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1개 지자체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계약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계약에 대한 평가 방법, 기준 및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민·관 유착의 부패 유발요인 내재
- ▶ ○○시 위·수탁 계약서
  - 제2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로 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5조(계약연장) 제2조 단서규정에 의거 “을”이 계속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기존업체와의 장기 위탁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부여로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 개선방안

### ㉓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으로 공정·투명성 제고

- 수탁자 선정방법 마련 및 계약기간 명확화

#### < 예 시 >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의계약 시에는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기본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연장 횟수를 규정하여 장기 연장을 방지

-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

#### < 예 시 >

- 위탁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재정·책임능력이 있고, 관련 전문성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 ④ 내실있는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 적격자선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참고 의견

1. 위원의 위촉 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후보군 모집 시 자격, 이해관계 등 사전검증 철저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

-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평가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차단 및 공정성 확보

### < 예 시 >

-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경우는, 위탁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자선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참고 의견

1. 수탁계약서 체결 시 관련규정에 근거 없는 연장계약(재위탁)과 관련된 불분명한 규약을 통한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지양
2. 계약연장(재위탁)에 대한 횡수 제한이 없어, 장기화 되는 관행적인 계약 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 횡수 경과 시 재 모집공고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재선발 단, 기존업체와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자선정 결과 또다시 기존 업체가 선정될 경우는 재위탁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를 위탁 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도 조례 제○조제○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계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계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p>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p> <p>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p> <p>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p>④ 위탁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p> <p>2. (필요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p> <p>⑤ 제4항의 단서와 같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까지 위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p>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b>제○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b>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li> <li>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li> <li>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li> <li>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li> <li>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신설〉</p>	<p><b>제○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b>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li> </ol> <p>④ 심사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p> <p>∴</p>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p><b>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p> <p>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li><li>2.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li><li>3. 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li><li>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ol> <p>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p>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 03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 ■ 평가대상 조문

#### 옥외광고물조례

##### 【반환불가 조례】 209개(93%) 지자체

제○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규정 없음】 15개(6.6%) 지자체

##### 【반환가능 조례】 1개(0.4%) 지자체

제○조(수수료) ① 법 제○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 문제점

- ⑥ 신청 취소 등 정당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만 야기
  - 민원인이 납부한 신고수수료를 ‘신청 취소’ 또는 ‘과오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징수
    -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기관(225개)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209개(92%) 기관은 조례에 옥외광고물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징수조례는 173개(77%) 기관이 반환하도록 규정에 명시

○○시 수수료 징수조례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신고수수료 반환 규정 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계 (비율)	광고물조례(A)			수수료조례(B)		
	반환가능	반환불가	규정없음	반환가능	반환불가	규정없음
225 (100%)	1 (1%)	209 (92%)	15 (7%)	173 (77%)	28 (12%)	24 (11%)

※ 수수료조례에는 77%가 수수료를 반환, 광고물조례에는 1%(1개)만 반환

○ 또한, 7개 기관의 표본 실태조사 결과, 미반환 수수료 약 11백만원('13년)

관련 사례

【2013년도 수입증지대 과오납한 경우】

(단위 : 천원, 건)

구분	○○시	○○시	○○시	○○시	○○시	○○시	○○시
① '13년도 징수액	46,185	40,608	9,360	38,049	17,424	232,530	22,608
② '13년도 수리 건수	15,395	6,768	936	4,110	5,356	46,506	7,536
③ 조례의 건당 증지대	3	6	10	7	3	5	3
→ 과오납액	0	0	0	9,279	1,356	0	0

※ 과오납액 산출 : 서면조사 시 제출된 징수액 - ('13년도 수리건수 × 조례로 정한 증지대)

(권익위 서면 실태조사, '14. 4월)

○ 따라서, 수수료가 소액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정

■ 개선방안

⑥ 정당한 반환 사유의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규정 개선

- 과오납, 신청인의 신청사항 변경 및 철회, 공무원의 착오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신고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옥외광고물 조례 규정을 공정하게 개선하여 민원인의 부담 완화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규정 불합리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합리화

# I.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수수료) ① (생략)</p> <p>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u>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제○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과오납한 경우</u></li> <li>2. <u>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li> <li>3. <u>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li> <li>4. ...</li> <li>5. ...</li> </ol>

##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2개, 기초 223개) \*협조 : 안전행정부

↳ 세종, 제주      ↳ 서울(서초, 강남), 광주 · 상주시 제외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절근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②수탁자선정과 투명성·공정성 제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③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	지방자치단체 (광역2,기초223)	'15. 11.

※ 조치기한 설정 : 자치법규 개정 1년 이하

※ 본 평가서의 법규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201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038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현황 039
  -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045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046
-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047
  -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069

## II.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추진 과제 : 부패척결을 위한 3대 전략, 5대 핵심분야 중 '공정성 훼손 비리' 차단
- ◆ 브랜드과제 :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해소 중 '지자체의 관행화된 재정누수 유발 행태' 개선

❑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

- 생활폐기물 처리(수집 · 운반)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55개 지자체(24%)가 직영, 173개(76%) 지자체가 대행으로 각각 처리

\* 226개 기초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조 4천억원('13년 기준)

※ 대행 : 1조 3천억원(93%), 직영 : 1천억원(7%)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한 탓에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미흡 등으로 대행업체의 위법 ·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청소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 노출

#### 관련 사례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관련 부정 · 부패】

- ▶ 최근 5년간('10~'14) 권익위 부패신고 및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 (권익위) 5건 중 68억원 편취 또는 횡령으로 3명 기소 및 2개 기관 주의 통보
  - (언론보도) 7건 중 50억원 편취 또는 횡령, 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40명 처벌
- ※ ○ ○ 청소대행업체, 혈세 수십억 횡령 · 착복 (경향신문, '13. 12월)

❑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대행업체의 부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현황

### 01 생활폐기물 관련 일반현황

#### ■ 폐기물의 분류

- 폐기물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산규모

- '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된 비용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세출예산이 약 1조원(72%), 봉투판매대가 약 4천억원(28%)을 차지  
- '13년도 비용은 '11년 대비 10.9% 증가 ('11년, 약 1조 3천억원 → '13년, 약 1조 4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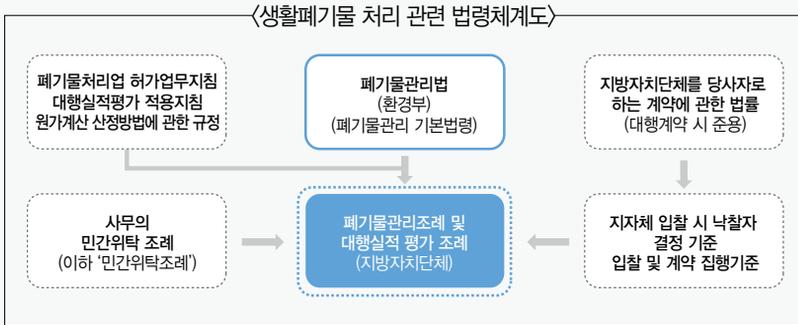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11→'13)
수집·운반비용(A)	12,8천억원	13,4천억원	14,2천억원	10.9%p 증가
- 세출예산(a)	9,2천억원	9,6천억원	10,2천억원	10.8%p 증가
- 봉투판매대(b)	3,6천억원	3,8천억원	4,0천억원	11.1%p 증가
비 율(b/A)	28.1%	28.3%	28.1%	변동 없음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현황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포함), 대행업체의 실적 평가 등의 대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  
- 실적평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은 없음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기물관리조례’ 중심으로 평가

### 02 예산관리(대행료 정산 및 환수) 현황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는 지자체가 대행용역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 고시 제2013-53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는 원가산정방법 등을 규정
  - ※ 원가계산금액은 폐기물 발생현황, 투입인력 및 장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금액
  - 51개 지자체(대행하는 173개 지자체의 32%)는 대행료를 정산하도록 규정

〈시·도별 대행료 정산규정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행료 정산	51	-	1	8	-	3	-	1	1	2	4	2	9	1	6	13	-	-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대행방법에 따른 정산규정은 지역도급방식이 22건으로 최대, 공사(공단) 대행 및 독립채산제는 0건으로 최소

## ■ 대항료 허위·부정 청구·수령 시 환수 여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대항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 환수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음
  - 직원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 작성·제출 등 대항료 부당청구 사례 발생

### 관련 사례

#### 【대항료 부당청구】

- ▶ ★★★시 전·현직 공무원과 청소용역업체 사업비 수집액 횡령 (국민일보, '14.9.3)
  - 친인척을 업체 미화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위탁사업비 등 총 15억 8천만원 횡령
- ▶ ○○시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 (감사원, '12. 10월)
  - 근로자에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7,800만원 부당청구

## 03 대항제도 및 계약관리(대항자 선정 등) 현황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항제도 및 운영 현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은 대항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정('86. 12월)시부터 대항이 가능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대항제도 도입이 본격화<sup>2)</sup>
  - 각 자치단체별로 「폐기물관리조례」 등을 제정하여 대항제도를 운영 중이며 228개 지자체의 75%인 173개 지자체가 대항처리 중

〈시·도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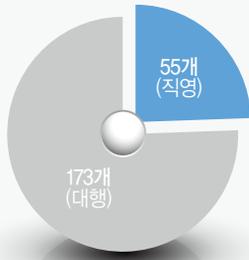
계	직영	대항			
		소계	공사(공단)	전문업체	혼용
228	55	173	6	140	27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항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환경부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전문업체 대행(140개 : 독립채산제 28, 톤당단가제 29, 지역도급제 72, 준 직영방식<sup>3)</sup> 11)에서는 지역도급제가 가장 높은 비율(51%)을 차지



〈 지역·대행 비율 〉



〈 대행방식 비율 〉

- 대행하는 173개 지자체 중 수의계약 135개(78%), 공개경쟁 38개(2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방법 적용 현황 〉

계	수의계약	공개경쟁
173	135	38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3)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을 승인해 주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

04 평가관리(대행실적 평가 등)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대항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143개 지자체(대행하는 173개 지자체의 82%)가 평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 조례에 평가기준을 반영한 지자체는 9개(6%), 평가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자체는 75개(52%), 결과활용을 규정한 지자체는 140개(98%)

〈시·도별 대행실적 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 제정	143	25	16	8	8	5	3	5	1	25	7	9	7	3	4	10	7	-
평가기준	9 (6%)	1	-	-	-	2	-	-	-	3	-	3	-	-	-	-	-	-
평가위원회	75 (52%)	24	1	8	2	4	1	-	-	8	4	4	3	3	3	6	4	-
결과활용	140 (98%)	25	16	8	8	5	3	4	1	25	6	8	7	3	4	10	7	-

■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항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위원회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평가단(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인센티브, 계약해지 및 대항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 II.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05 사후관리(위법 · 부당행위 업체 제재) 현황

#### ■ 뇌물 등 비리행위 대행자 제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행정에 있어서 업체의 비리 척결을 위해 뇌물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에는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
- 환경부는 같은 조항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 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뇌물 등 비리를 ‘뇌물공여, 사기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추진 중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13. 11. 25., 의안번호 : 1908023) 〉

\* 뇌물 등 비리혐의 ⇒ 「형법」 제133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 ■ 근로자 권익보호 관련 대행자 제재기준

-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안전행정부, '06. 12월)은 '0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sup>4)</sup>은 낙찰하한율을 87.7% 이상으로 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

4)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



###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14. 2~3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민원 및 부패행위 등 사건 조사
- '14. 4~5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비 실태조사
- '14. 6~7월 : 현장 실태조사
- '14. 8~9월 : 관련 자치법규 등 서면 실태조사 및 분석

#### ■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4. 6. 18. ~ 8. 31. 기간 중
- 대상기관 : 243개 지자체(광역시+기초) 및 4개 권역, 7개 기초지자체
- 조사방식 : 대행현황 및 통계 등 전 지자체 전수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조사

#### ■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예산관리, 계약관리, 평가관리, 사후관리 분야
-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
  - 생활폐기물 대행의 계약관리, 평가관리, 예산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령 및 관련 조례에 대해 수직적 분석
  - 계약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수평적 분석

법령체계		주요 내용
법 령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대행자 선정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 · 대행자 실적평가 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 · 대행자 계약해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령	· 대행자 선정 등의 계약관리 및 대가지급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자 치 법 규	폐기물관리조례	· 대행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대행료 지급 및 정산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대행자 대행실적 평가 조례	· 평가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등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민간위탁조례	· 대행자 선정 및 재계약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예산 관리	<p>1 대행료 관리 및 환수미흡으로 지방재정 누수</p> <p>1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없어 재정누수</p>	<p>1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p> <p>1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차단</p>
계약 관리	<p>2 대행자의 자의적 선정과 장기 계약으로 부패유발요인 상존</p> <p>2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상존</p> <p>3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 저해</p>	<p>2 공정·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p> <p>2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 방법 및 기준 마련</p> <p>3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 차단</p>
평가 관리	<p>3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 부실 및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p> <p>4 대행실적 평가규정 미비로 부실 대행업체 제재 곤란</p> <p>5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저해</p>	<p>3 대행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 및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p> <p>4 대행실적 평가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p> <p>5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p>
사후 관리	<p>4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 대행자에 대한 제재 미흡</p> <p>6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 행위 대행업체 제재규정 부재</p>	<p>4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p> <p>6 제재규정 강화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차단</p>



##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1 대항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 ■ 평가대상 조문

##### 폐기물관리조례

**【조례 미제정】 122개 지자체(71%)**

**【우수 조례】 대항료 정산을 규정한 51개 지자체(29%)**

제00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군·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 **문제점**

①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 **대행처리 173개 지자체 중 122개 지자체(71%)는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료 정산 규정이 없어 정산을 하지 않고,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여 지방 재정 낭비**

- **(실태조사) 131개 지자체(76%)는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대행료 정산 규정 및 정산 현황〉

소 계	대행료 정산 규정		소 계	대행료 정산 실시	
	규 정	미규 정		실 시	미실 시
173	51	122 (71%)	173	42	131 (76%)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전수조사) 권익위가 '13년도에 대행료 정산을 실시한 42개 지자체의 조사결과, 정산절차를 통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34억원의 예산을 절감**

〈대행료 정산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

(단위 : 천원, '13년도 기준)

구 분	지자체수	계 약 금 액	최 종 금 액	변 동 액
감 액	24	149,354,817	144,422,416	(감) 4,684,350
증 액	6	29,472,787	30,716,174	(증) 1,243,387
변동없음	12	81,734,164	81,734,164	-
계	42	260,561,768	256,872,753	(감) 3,440,963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표본조사)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청구에 대하여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3년간 미화원 등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 계상하고 청구하여 1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음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및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구 분	부당청구액	부당청구내용
◎◎시 ◇구	19,590	수집운반 수수료 과다청구
◆◆시 □□구	42,383	차량수리비 허위청구
■■시 △구	78,059	근로자 급여 부풀려 청구
▲▲도 ▽▽시	1,015,997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과다 계상 청구
▼▼ ◁▷시	68,822	근로자 급여 부풀려 청구
계	1,224,851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언론보도) 일부 대행업체는 미화원 등 근로자에게 ‘비정규직 권익보호 회계통첩’\*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와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련 사례

【인건비 지급 부적정】

- ▶ ○○시는 2014년도 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상향(운전원 24.7%, 수거원 16.9%) 하여 계약하였지만, A업체는 10%, B업체는 4~14%, C업체는 9~11%, D업체는 10%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 (○○일보, '14. 5월)

\*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안전행정부, '06. 12월) : '0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은 ① 낙찰하한율을 87.7% 이상 ②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③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을 부여

- 모든 지자체가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업체에서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환수하지 않아 지방재정 누수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표본조사) 대행료 부당청구 환수에 대하여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2개 지자체는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1억4천7백만원을 환수하지 못하였고, 3개 지자체는 계약진행 중에 환수하거나 소송을 통해 환수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환수 현황〉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구 분	부당 청구액	부당청구분환수			미환수사유
		환수액	미환수액	환수근거	
◎○시 ◇구	19,590	19,590	-	계약서 제18조	-
◆◆시 □□구	42,383	42,383	-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
■■시 △구	78,059	-	78,059	-	계약기간만료
▲▲도 ▽▽시	1,015,997	1,015,997	-	법원 판결결과(고지서로 부과)	-
▼▼ <△시	68,822	-	68,822	-	소송 중
계	1,224,851	1,077,970	146,881	-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 개선방안

#### ①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차단

〈대행료 정산〉

- 대행료 정산규정을 마련하고,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낭비 차단
  - ※ (예) 대행료 지급 시마다 정산을 의무화 하고, 대행료를 გადა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 실시

#### ▶ 광주시 광산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톤당 단가제(구청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 지급)  
도입·확대 의무 규정

- 대행료를 정산 시에는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근로자 권익 보호
  - ※ (예)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경고, 계약해지 등의 처분 명시



### 〈 전문가 자문 결과 〉

- ▶ 대행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인건비성 경비(임금, 보험료 등)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필요
  - 다만, 대행업체의 자율권 및 사업탄력성(월요일, 여름철 등 청소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임시 단기인력 고용 필요)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산 실시

### 〈 대행료 환수 〉

-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방지
  - ※ (예)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신설
- ▶ 우수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대행료 환수규정 신설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예시】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u>제0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u></p> <p>1. <u>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2. <u>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p>

## 02 공정 ·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

## ■ 평가대상 조문

## 폐기물관리조례

## 【조례 미제정】 116개 지자체(67%)

## 【미흡 조례】 선정방법과 기준 중 하나만을 정한 30개 지자체(17%)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 등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 계약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위탁 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우수 조례】 선정방법과 기준을 모두 정한 27개 지자체(16%)

##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계약 성실이행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대행계약 성실 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군·구의회 의원, 관련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군·구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 문제점

②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상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은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행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대행자로 선정하여 선정과정이 불투명

#### 관련 사례

##### 【대행자 선정 관련 특혜 시비】

- ▶ ○○시는 긴급입찰을 통해 추정금액 25억원(3년간)의 민간대행 청소용역을 모집하면서 입찰참가 자격과 대상, 기일을 제한 공고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뉴시스, '14. 1월)
- ▶ ♣♣시가 장기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는 모두 4군데로 ●●●● 28년, ●●●● 26년, ■■■■■■ 15년, □□□□ 14년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리 세습도 가능 (○○동부, '12. 9월)

- (선정방법) 173개 지자체 중 116개 지자체(67%)가 관련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대행자를 선정, 57개 지자체(33%)만이 공개 경쟁 등으로 선정방법을 규정
- (선정절차) 143개 지자체(82%)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30개 지자체(18%)만 신청서 평가 등으로 선정절차를 규정

〈대행자 선정방법 및 절차 규정 현황〉

선 정 방 법					선 정 절 차				
소 계	공 개 경 쟁	신 청 서 접 수	타 법 준 용	의 회 동 의	소 계	신 청 서 평 가	타 법 준 용	별 도 기 준 등	의 회 동 의
57	31	19	4	3	30	17	5	6	3
*대행 173개 중 미규정 116개 (67%) : 173-57					*대행 173개 중 미규정 143개 (82%) : 173-30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설문조사) 권익위가 특정업체를 대행자로 선정한 135개 지자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정 사유를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57%), ‘경쟁시장 형성 어려움’(19%), ‘업무의 연속성’(12%) 순으로 응답, 공개경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

〈 계약방법 선정 사유 〉

소 계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경쟁시장 형성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수의계약사유 해 당	기 타
244	119	65	46	8	11

※ 1, 2순위 복수응답 허용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현행법령) 「지방계약법」,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  
※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집행근거 및 적용 적정성 여부 〉

- ▶ 일부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또는 「민간위탁조례」를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sup>5)</sup>은 법제처 해석(’07. 3. 23.)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대행자가 다른 법령에 명칭이 명시된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 민간위탁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위탁’이 아닌 ‘대행’이므로 대행자 선정의 적용 조례가 아님

㉟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 저해

- 계약연장 규정이 없는 119개 지자체(84%)는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사유로 동일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 신규업체 진입차단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독점운영에 따른 청소 서비스 질 저하
  - (조례) 146개 지자체(84%)는 대행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139개 지자체(80%) 역시 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음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대행계약기간 및 연장 규정 현황〉

계 약 기 간					계 약 연 장
소 계	1년	(최소) 2년	3년 (이내)	5년 이내	
27	12	6	8	1	34
*대행 173개 중 미규정 146개 (84%) : 173-27					*미규정 139개 (80%) : 173-34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사례) 수의계약 135개 지자체 중 119개 지자체(88%)가 동일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있고, 8개 지자체는 30년 이상 장기계약

〈동일업체 누적계약기간(수의계약)〉

계	10년 이상				10년 미만
	소 계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135	119 (88%)	65	46	8	16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 개선방안

#### 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예)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등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각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대행자 선정

▶ 서울시 종로구 :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구성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참고 사례**

**【입찰 탈락업체 장비 및 인원 활용 방안】**

- ▶ 광주시 남구 : 미화원 등 근로자 및 압록 등 청소장비를 신규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신·구 업체간 손실 및 비용 최소화)
- ▶ 대구시 달서구 : 입찰 탈락업체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도록 함 (탈락업체의 영업권 보장으로 영세업체 도산 방지)

**일본의 대행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

- 일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일반적임
- 그러나, 최근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수의계약에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08. 11월)

〈 대행계약 공개경쟁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4. 7월)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영세하고, 수집·운반 실적이 부족하여 적격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극히 드물어 적정업체 선정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 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선정방안 검토 필요 (○○도 ■■■시 생활 폐기물 대행 업무담당자)
- ▶ 기존의 수의계약(약 19년간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폐지하고, 200x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용기준 등의 부재로 입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주무부처에서 입찰 집행 관련 표준안(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시 ■■■구 생활 폐기물 대행 업무담당자)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㉓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재계약) 규정 마련으로 부패유발요인 차단

#### ○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보장

- ※ (예) 대행계약기간을 2~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연장(재계약) 사유를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 등으로 정하고, 계약연장(재계약) 횟수를 2~3회로 정함  
⇒ 환경부 지침은 계약연장 횟수를 3회 한도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 종로구 : 대행계약기간은 3년, 대행실적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와 2회 재계약 허용

- ▶ 우수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
- ▶ 미흡 조례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 개선안을 참고하여 선정방법과 기준을 신설

【예시】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0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p> <p>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 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p> <p>.....</p> <p>0.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p> <p>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0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p> <p>2. ....</p> <p>3. ....</p> <p>4. ....</p> <p>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0회 이내로 한다.</p>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03 대행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 및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

#### ■ 평가대상 조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미제정】** 30개 지자체(17%)

**【미흡 조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모두 정하지 않은 111개 지자체(64%)

**【우수 조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중 하나 이상을 정한 32개 지자체(19%)

제5조(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

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

#### 2. 평가단 현장평가

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

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

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

#### 3. 실적서류 평가

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이해충돌 가능성(3-3)

■ **문제점**

④ **대행실적 평가규정 미비로 부실 대행업체 제재 곤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부실한 대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

〈 **대행실적 평가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

- ▶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

- 173개 지자체 가운데 143개 지자체가 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의 지자체는 실질적인 평가기준, 항목 · 배점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음

- 143개 지자체 중 조례에서 평가기준을 규정한 지자체는 9개(6%),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20%)임

〈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규정 현황** 〉

평 가 조 례					
미제정	제 정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규 정	미규정	규 정	미규정
30	143	9	134	29	114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㉟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대행실적 평가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저해

#### 〈평가위원회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 ▶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 (조례) 98개 지자체(대행처리 173개 지자체의 57%)는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고,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 75개 지자체(43%)는 자격 및 구성 비율을 불명확하게 규정

#### 〈평가위원회 관련사항 규정 현황〉

평 가 조 례							
미규정	규 정	자격 및 구성비율		임기·연임 규정		이해충돌방지	
		규 정	미규정	규 정	미규정	규 정	미규정
98	75	73	73	29	46	22	53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사례)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부적절 사례 발생

#### 관련 사례

#####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절】

- ▶ ♠시 ♥♥구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3인(공무원), 위촉직 6인을 임명하면서, 위촉직 위원에 ♥♥환경시설공단 ♣♣사업소장을 임명
- ♣♣환경시설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인계받아 최종처리하는 기관으로 대행업체와 이해관계자임  
(권익위 실태조사, '14. 7월)



## ■ 개선방안

### ④ 대행자 평가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제도의 내실 강화

- '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실적 평가 조례' 등에 대행자 평가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부실 대행자 관리 철저
  - ※ (예) 관련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조례에 포함

▶ 경기도 안성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을 조례에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을 별표로 정함

### ⑤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

-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 (예)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위원별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 (예)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촉규정 마련

- ▶ 우수 조례 지자체: 개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보완
- ▶ 미흡 조례 지자체: 개선안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및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규정
- ▶ 조례 미제정 지자체: 개선안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및 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등 신설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u>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u>  <u>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li> <li>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li> <li>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li> <li>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li> </ol> <p><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u>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04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

#### ■ 평가대상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 문제점

##### ⑥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 대행업체 제재규정 부재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청구, 미화원 인건비 부적정 지급 등의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에 한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을 금지



**관련 사례**

**【청소대행자격 논란】**

- ▶ 14억 횡령업자에 벌금 600만원...청소대행 자격 논란 (연합뉴스, '13. 5월)
  - 생활폐기물 대행 관련 뇌물 등 비리로 7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대행계약 해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돈을 14억여원을 빼돌리고도 벌금 600만원 선고로 대행계약 및 자격 유지

- 그러나, 미화원 등의 인건비 부적정 지급 차단과 허위·부당하게 대행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아 발생하는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업체 제재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㉔ 제재규정 강화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차단**

-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및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여 지방재정 낭비 방지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 권익 보호
  - ※ (예)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금지 조항에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 및 '근로자 인건비 부적정 지급'의 경우 추가

- ▶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안전행정부, '06. 12월)은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예시】 폐기물관리법

현 행	개선안(예시)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p> <p>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p> <p>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환경부,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로 예산 낭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조례</li> <li>- 대행료 정산규정 마련</li> </ul>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15. 11.
② 공정·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마련 및 계약에 대한 부패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조례</li> <li>-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li> </ul>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조례</li> <li>-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마련</li> </ul>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15. 11.
③ 대행 실적 평가의 내실화 제고 및 평가위원회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li> <li>- 대행실적 평가관련 규정 마련</li> </ul>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조례 또는 대행업체 평가 조례</li> <li>-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li> </ul>	대행 처리 173개 지방자치단체	'15. 11.
④ 대행자 제재 기준 강화로 위법·부당행위 사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li> <li>- 위법·부당행위 대행업체 제재규정 마련</li> </ul>	환경부	'15. 11.

※ 조치기한 설정: 법률 및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 〈 개선권고(안) 조치 대상기관 현황 〉

구 분	대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5)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16)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8)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8)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5)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27)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12)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동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10)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11)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4)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무안군(8)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16)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1)
계	173개 지방자치단체



201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074
2. 청소년수련시설 제도 및 운영현황	076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08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085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086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14

---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 국 경과 제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국경과제 46)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 브랜드과제 :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해소 중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소년의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통해 민주적 사고를 지닌 인격체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도모를 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이에 따라, 전국에 782개(국립6, 지자체500, 민간276) 수련시설 설치 ·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3개(63.0%) 지자체가 총 500개 수련시설 중 342개 (68.4%) 수련시설을 외부에 위탁운영

➔ '13년도 위탁시설 총수입 : 2천 9백여억원 [보조금은 1천 3백여억원(44.5%)]

○ 위탁 수련시설은 '07년 253개 → '13년 348개로 95개소(↑ 37.5%) 증가하는 등 위탁관리에 대한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대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비 고 ( '11→'13)
전체 시설 수	668	690	707	721	738	753	782	668→782
위탁	253	289	303	333	332	332	348	253→348 (↑ 37.5%)

※ 총 위탁시설(348개) = 국립(6개) + 지자체(342개)



- ❑ 그간 청소년수련시설이 양적으로 성장('07년 668개 → '13년 782개)하였으나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비청소년단체 위탁 등),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 발생
  - ※ 342개 위탁 수련시설 중 89개소(26.0%)를 부적합 단체에 위탁하여 3백 9십여억원의 위탁 보조금 부당지급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할 때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는 기관·단체와 위탁협약 체결 (언론보도)
  
- ❑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 선정·위탁운영 과정의 특혜 발생 요인을 차단 함으로써 청소년육성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2. 청소년수련시설 제도 및 운영현황

### 01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유형

#### ■ 개념

○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종합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 위주의 정보·문화·예술중심 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수련활동이 가능한 종합시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한 야영편의 제공
		유스호스텔 : 청소년 숙박편의 시설, 여행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 직업체험·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 활동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 국가·지자체가 설치 시 입지조건,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행
-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  
참여비율 각각 5분의 1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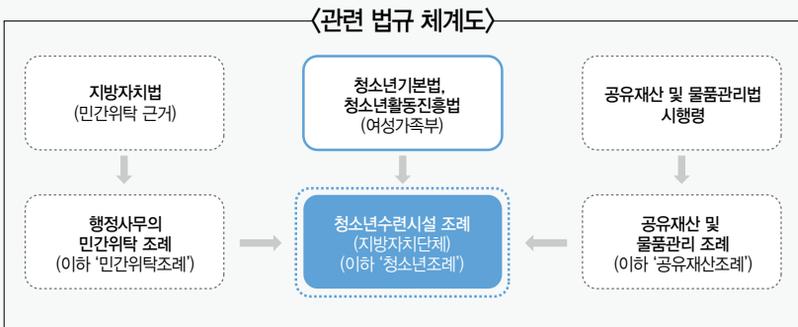
○ 국가 :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sup>6)</sup>에 의해 지원,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 의무화
- 민간분야 :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수련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02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근거 및 운영형태

### ■ 근거 법령

- 여성가족부 소관 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별 자치법규(조례)에 규정
  - (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 \* 청소년단체 정의, 청소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탁)운영, 수련시설 허가·등록
  - (자치법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지자체)
    - \* 시설운영의 위탁, 위탁기간 연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지도·감독 등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간위탁 기본조례
    - \* 행정사무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년조례’ 중심으로 평가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조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조례를 보완·정비)

6)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칭 변경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 정의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2005.4.8.), 관보 제15953호)】**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 ·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공개모집 및 재계약 절차



■ 지방자치단체 운영형태

① 지방자치단체 직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운영
- 운영형태 : 지자체 담당부서, 소속기관(사업소)

②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위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 ➔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③ 민간 청소년단체 등 위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 위탁대상 :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등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0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 '13.12월 기준, 전체 782개 수련시설 중 공공시설은 국립 6개소(0.8%), 지자체 500개(63.9%) (단위 : 개소)

구 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 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합 계	%
국 립	-	-	6	-	-	-	6	0.8
지자체	184	226	41	24	16	9	500	63.9
민 간	3	5	132	18	118	-	276	35.3
합 계 (%)	187 (23.9)	231 (29.5)	179 (22.9)	42 (5.4)	134 (17.1)	9 (1.2)	782 (100.0)	100

- '13.12월 기준, 243개 지자체 중 153개(63.0%) 지자체가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시설은 342개소(68.4%)에 이릅니다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광역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자체	기초 226	25	16	8	10	5	5	5	0	31	18	12	15	14	22	23	18	0
위탁 지자체	광역 13	1	1	1	1	1	1	-	1	1	1	1	-	-	-	1	1	1
	기초 140	17	7	6	6	5	5	4	-	24	9	7	10	8	15	5	12	-
	합계 153 (63.0%)	18	8	7	7	6	6	4	1	25	10	8	10	8	15	6	13	1
합 계	500	직영시설 수 158		% 31.6		위탁시설 수 342		% 68.4										

- 위탁시설 342개소의 연간 총수입은 2천 9백여억원이며, 이 중 시설자체 수입은 1천 5백여억원(50.2%), 보조금수입은 1천 3백여억원(44.5%)

('13년 기준, 단위 : 천원)

시설수	총수입	지자체수입	%	시설자체수입	%	보조금수입	%
342	295,074,148	15,573,167	5.3	148,078,759	50.2	131,422,222	44.5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 종합평가 개요 〉

#### ▶ (평가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증대

#### ▶ (평가기관)

- (기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평가주기)

- (기존) 3년단위 ⇒ ('14년 이후) 2년단위

➡ 2011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2012년(청소년수련관) → 2013년(청소년문화의집) → 2014년(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2015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 ▶ (추진체계)

구분	주요 담당업무
여성가족부	· 평가업무의 총괄조정 - 평가사업 세부운영방안 및 편람 확정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정책 반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진행 및 평가결과 보고 등 평가사업 총괄
평가지표 개발진(외부)	· 평가지표 초안 작성 및 현장의견 수렴
평가위원회(외부)	· 평가지표 최종 확정 · 청소년수련원 평가자료 사전검토 및 현장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청소년수련시설	· 평가자료 보고서 작성
지자체	·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

#### ▶ (평가결과 활용)

- 최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 시설운영 분야 평가<sup>7)</sup>

시 도	시설종류	시설명	종합평가 등급	안전점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서울	유스호텔	○○유스호텔	우수	B	B	양호	양호	적합	적합

- 시설 종류별로 2년 주기로 평가 실시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 현장평가 병행
- 평가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우수시설은 장관표창,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동판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 \* 5단계 등급 :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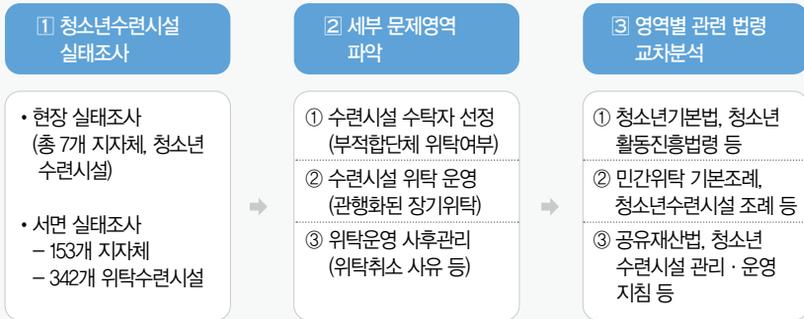
7)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2014.7.22. 시행)으로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종합평가 기간이 3년 → 2년으로 변경

### 3.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 추진경과

▶ 새 정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65개 국정과제 중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14. 5월 : 3대 분야, 7개 과제 현행법령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4. 6 ~ 8월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 등 기초조사
- '14. 8 ~ 9월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서면 · 현장조사 병행)
- '14. 10월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마련



#### 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실태조사 개요

- 서면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4. 8. 13. ~ '14. 10. 8.(8주 간)
  - 대상기관 : 전국 153개 지자체(광역 13, 기초 140)
  - 조사방식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규정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 현장 실태조사(광역 · 기초지자체 4곳, 청소년수련시설 3곳)
  - 조사기간 : '14. 6. 27. ~ '14. 7. 25.(4주 간)
  - 대상기관 : 서울, 경기, 충남
  - 조사방식 : 청소년수련시설, 예산 · 계약부서, 감사부서 담당자 현장 면담 및 자료 요청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㉒ 청소년수련시설 세부 문제영역 파악

- 현장 ·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세부 문제영역 파악
  - ① 운영위탁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 등
  - ② 사후관리 : 부실운영 ·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책임확보 미흡 등
  - ③ 선정운영 : 공정 · 투명한 수탁자 선정규정 미흡, 반환규정 미비

#### ㉓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방법

- 청소년수련시설 제반 운영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등 자치법규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위탁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행정사무 민간 위탁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청소년수련시설 법령체계		주요 내용
법령	법률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단체 정의, 청소년 시설의 종류 및 설치 · (위탁)운영</li> <li>• 수련시설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 또는 운영대표자 결격사유</li> <li>• 수련시설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금지행위 및 운영중지 명령</li> <li>•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감독 및 벌칙</li> </ul>
	대통령령 (동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단체의 범위, 지원 및 보조</li> </ul>
	부령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련시설 종합평가 주기 · 방법 · 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li> </ul>
	행정규칙 (업무지침, 내부방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허가 및 시설기준</li> <li>•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 및 변경 · 휴지 · 폐지</li> <li>•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 감독</li> </ul>
자치법규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계약방법,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등</li> </ul>
	청소년수련시설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운영의 위탁, 위탁기간 연장</li> <li>• 시설 이용료, 지도 · 감독 등</li> </ul>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운영 위탁	<p><b>1</b>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및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p> <p>① 청소년수련시설을 비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육성 활동 위축</p> <p>② 자의적인 위탁기간 연장으로 기존단체에 특혜 부여</p> <p>③ 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 미비로 수탁자 관리부실</p>	<p><b>1</b>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p> <p>①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방안 마련</p> <p>②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 연장 관행 개선</p> <p>③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p>
사후 관리	<p><b>2</b> 부실운영 ·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p> <p>④ 종합평가 활용미비로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p> <p>⑤ 위탁취소 법적 근거 부재 및 제재의 형평성 · 일관성 결여</p> <p>⑥ 위탁취소자에 대한 활동제한 부재로 비위단체 재진입 가능</p>	<p><b>2</b> 부실운영 ·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p> <p>④ 종합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탁자 부실운영 방지</p> <p>⑤ 위탁취소 규정 신설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p> <p>⑥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p>
선정 운영	<p><b>3</b>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장치 및 이용료 반환기준 미비</p> <p>⑦ 공정 ·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규정 미흡</p> <p>⑧ 반환규정 미비로 부당한 비용 부담 및 형평성 저해</p>	<p><b>2</b> 수탁자 선정과정 및 이용료 반환 기준의 공정성 확보</p> <p>⑦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p> <p>⑧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기준 정비</p>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5.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01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 ■ 평가대상 조문

#####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지자체)

##### 【운영위탁】

- 부적정 사례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허용 77개(50.3%) 지자체  
제○조(운영위탁) 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도시공사, 운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개인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적정 사례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금지 76개(49.7%) 지자체  
제○조(운영위탁) ① (생략)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위탁연장】

- 미제정 : 68개(44%) 지자체
- 미흡 사례 : 73개(48%) 지자체  
제○조(위탁연장)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우수 사례 : 12개(8%) 지자체  
제○조(위탁연장)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 【수탁자 운영평가】

- 미제정 : 148개(97%) 지자체
- 우수 사례 : 5개(3%) 지자체  
제○조(위탁협약)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 ■ 문제점

###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육성 활동 위축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하나,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저하
  - 비청소년단체는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근로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등 전문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낮아 청소년 지도에 역량 발휘 곤란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위축 우려

※ (예) 시설관리공단 :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생산보다는 시설관리에 중점 운영

#### 관련 사례

- ▶ 도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부실위탁’ (경기일보, '13.11.21)  
지자체 위탁 74곳 중 11곳 “청소년단체와 무관” 드러나
- ▶ 감사없고 자체규정 만들고...민간위탁 시설들 엉망 (시사제주, '13.3.6)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할 때”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는 기관단체와 위탁협약 체결”

- (조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153개 지자체 중 77개(50.3%)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하여 조례에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규정

합 계 (비율)	비청소년단체에 위탁 허용			비청소년단체에 위탁 금지
	소 계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153 (100%)	77 (50.3%)	61 (39.9%)	21 (13.7%)	76 (49.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소년단체에 운영위탁 가능

- (실례) '13. 12월 기준, 342개 수련시설 중 89개(26.0%) 시설을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 소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탁 시설	342	57	17	12	14	9	12	7	1	74	23	12	16	17	25	10	24	12
비 청소년 단체	89	14	4	2	9	1	-	2	-	18	3	3	8	-	1	6	11	7
	26.0(%)	24.6	23.5	16.7	64.3	11.1	-	28.6	-	24.3	13.0	25.0	50.0	-	4.0	60.0	45.8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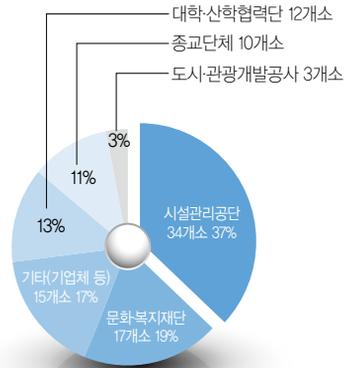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관련 사례

#### 【유형별 법률위반 위탁】

▶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공단,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택지개발·공공주택·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여가활동 위주의 영리목적의 시설 레저업체, 지역 친목 단체인 마을회 등에 위탁

구분	수탁기관 유형	사례 수 (비율)
1	시설관리공단	34 (38.2%)
2	문화·복지재단	16 (18.0%)
3	학교법인·산학협력단	12 (13.5%)
4	종교단체(○○교회 등)	10 (11.2%)
5	도시공사·관광개발공사	3 (3.4%)
6	기타(레저업체, 마을회 등)	14 (15.7%)
합 계		89 (100.0%)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비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89개 시설의 '13년도 총수입은 7백 1십여억원  
이며, 이 중 지원받은 위탁보조금은 3백 9십여억원(55.9%)

(단위 : 천원)

시설수	총수입	%	지자체수입	%	시설자체수입	%	보조금수입	%
89개소	71,111,348	100.0	13,387,800	18.8	17,945,523	25.2	39,778,026	55.9

**관련 사례**

- ▶ ○○도 내 5개 마을회는 각각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면서, 최근까지 매년 1억 5백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고 있고, 이들 마을회의 평균 위탁기간은 11.1년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최초 위탁 시부터 수의계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 특히, '13년도 종합평가에서 5개 마을회 운영시설 중 최우수, 우수등급은 단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가 운영하는 문화의 집은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부실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 342개 수련시설 중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이 92개(26.9%)인데 반해, 비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89개 시설 중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51개(57.3%)로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아 특정단체 선정을 위해 심의절차 누락 등 특혜 부여 소지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또한, 법률에서 위탁 시 청소년단체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지자체 내부 판단에 의존
  - 청소년단체 해당여부를 108개(76.6%)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 20개(14.2%)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에 의견조회를 통해 판단

구 분	합 계 (총 153개)	자체 판단		외부 판단		기 타
		담당부서	기타부서	상급지자체	여성가족부	
단일확인	141 (100.0%)	108 (76.6%)	2 (1.4%)	6 (4.3%)	20 (14.2%)	5 (3.5%)
복수확인	6	√			√	
	2	√		√		
	2	√		√	√	
	1			√	√	√

**< 전문가 자문 결과 >**

- ▶ 수탁자 선정이 되었음에도 사후적으로 부적정 판단을 받게 되면 수탁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처(여성가족부)에 대한 의견조회 등 협조를 받도록 하고, 주무부처는 사후감사 등을 통해 부적정 단체를 선별함이 바람직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㉒ 자의적인 위탁기간<sup>8)</sup> 연장으로 기존단체에 특혜 부여

- 위탁연장 기간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존단체에 장기간 위탁함으로써 특혜 부여
  - 수련시설을 위탁한 153개 지자체 중 80개(52.3%)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재계약 기본연수 규정이 없고, 141개(92.2%) 지자체는 재계약에 따른 연장횟수 미규정(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각각 53개(34.6%), 136개(88.9%))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 · 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위탁연장 기본연수	153 (100%)	73	80 (52.3%)	32	121 (79.1%)	53 (34.6%)
위탁연장 횟수제한	153 (100%)	12	141 (92.2%)	5	148 (96.7%)	136 (88.9%)

- 대다수 지자체(141개, 92.2%)가 조례에 위탁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위수탁계약서에도 위탁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

#### 【조례】 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 기간의 1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 【위수탁 협약서】 군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계약서 제4조(위탁운영)

- ② “○○○”이 이 수련관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342개 시설 중 220개(64.3%) 시설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였고, 이 중 106개 (48.2%)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위탁 시설
- 신규단체의 진입이 곤란하여 특정단체의 '위탁시설 사유화' 초래

구 분	합 계 (비율)	위탁기간			비 고	
		5년 미만	5~10년	10년 초과	최고(년)	평균(년)
전 체 (비율)	342 100.0%	140개소 40.9%	87개소 25.4%	115개소 33.6%	25.8	7.5
위탁연장 시설 (비율)	220 100.0%	35개소 15.9%	79개소 35.9%	106개소 48.2%	25.8 (2개소)	9.9

※ 계약기간 연장없는 10년 초과 운영 시설(9개소): 시설공단, 문화재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

#### 관련 사례

-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청소년수련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6년여 동안 계속하여 동일 단체(종교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20년 이상 장기운영 단체도 7개소에 달함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㉓ 수탁자에 대한 평가절차 미비로 수탁자 관리부실

-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위탁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평가 미실시로 수탁자 관리 부실
- 153개 지자체 중 148개(96.7%)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평가절차 규정 없음(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141개(92.2%))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수탁자 운영평가 규정	153 (100%)	5	148 (96.7%)	7	146 (95.4%)	141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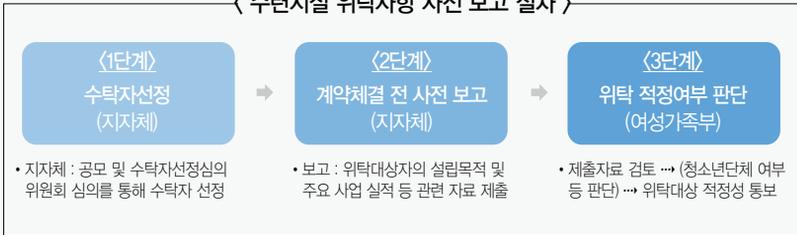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 개선방안

##### ①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방안 마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위탁범위를 벗어나 수련시설 위탁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조문 삭제
  - ※ 고양시 : 고양시문화재단(비청소년단체)이 위탁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3개  
청소년시설을 신설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이관 · 운영 계획(조례 제정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지자체의 위탁계약 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여  
위법한 위탁대상 확대 근본 차단<청소년활동진흥법 조문 신설>

#### 〈수련시설 위탁사항 사전 보고 절차〉



#### 〈부적합단체 위탁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4. 7월)〉

-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4. 7. 22.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청소년단체 위탁대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 · 적발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관)
- ▶ 동일 수련시설도 지자체 실무자마다 위탁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여 청소년단체 해당여부에 이견 발생 (서울시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 [참고 의견] 청소년단체에만 수련시설을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을 검토

- ▶ '14년부터 종합평가가 의무화되고, 평가주기가 단축(3년 → 2년)되는 등 수련시설 운영실적 평가사례가 다수 집적되어 청소년단체와 기타 수탁자 간 관리운영 능력 비교·평가가 보다 면밀히 가능해지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대상에 청소년단체 이외에 비영리법인·단체까지 허용 여부를 향후 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필요

⇒ 우선, 종합평가 활용도를 높여 부실운영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청소년단체라도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확대하여 동일 직역 간 경쟁강화 유도 ← **청소년단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이 보장되는 관행 타파**

▼ 관련 개선방안 : ④ (종합평가 활용도 제고를 통한 부실운영 방지 방안 마련)

### ②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 개선

-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 ▶ 괴산군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을 위한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강남구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 위탁기간 연장 시 수탁자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예) 청소년조례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준용 명칭 등

- ▶ 서울시 : 재계약 시 신규 위탁사무 선정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와 별도로 수탁자 운영능력 평가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개선안(예시)
<p>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li> <li>제12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li> <li>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li> <li>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li> </ol> <p>② (생략)</p>	<p>제33조의2(보고 등)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수탁협약 체결 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li> <li>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li> <li>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li> <li>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li> <li><u>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위탁사항</u></li> </ol> <p>② (현행과 같음)</p>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규정이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 · 정비

【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 조 (운 영 위 탁) 위 탁 기 간 은 계약일로부터 ○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신설〉</p>	<p>제○조(운영위탁)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또는) 위탁기간은 ○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p> <p>제18조(위탁협약) ① 위탁기간은 ○년 이내로 하되, ○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는) ○○○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제○의2 평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p>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02 부실운영 ·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 평가대상 조문

###### 청소년활동진흥법

###### 【위탁취소 규정 없음】

-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 · 방법 ·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 ·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 전문성, 시설 · 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 문제점

### ④ 종합평가 활용미비로 부실운영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 평가결과 활용은 주로 최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정등급 이하 시설(ex.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미흡
- 153개 지자체 중 청소년조례에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규정 미비 153개(100.0%), 위탁계약 연장 시 종합평가 결과반영 미비 146개 (95.4%) 지자체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153 (100%)	0	153 (100.0%)	0	153 (100.0%)	153 (100.0%)
재계약시 종합평가 반영 의무화	153 (100%)	7	146 (95.4%)	4	149 (97.4%)	142 (92.8%)

※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는 경우 시설 허가·등록취소 가능하나, 취소여부가 임의사항이며 통상 기본 계약기간이 3~5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미흡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참고】** ◎○구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공동심사기준 및 항목” 예시

▶ 위탁계약 연장 시,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심사하는 평가항목 없음

항 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운영주체의 공 신 력 (30점)	① 수탁법인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이사의 구성 (3)</li> <li>· 이사회회 활동실적 (2)</li> <li>·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의 지적사항 (3)</li> <li>·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li> </ul>
	② 공모사업 참여실적 (2)	· 수탁기간 동안 건강가정 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 (2)
	③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 (3)</li> <li>· 법인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적절한 기준 설정 및 수행 (3)</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재정 능력 (20점)	① 향후 위탁기간 재정 부담 계획 (5)	·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 (5)
	② 예산관리 및 집행 (15)	· 법인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 (5) ...이하 생략...
사업능력 (30점)	① 인력관리 (8)	·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 (3) ...이하 생략...
	② 지역사회와의 관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3)</li> <li>·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관리 (2)</li> </ul>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법인대표 및 시설장 면접(20점)	① 향후 운영계획 (12)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센터 운영계획 (4)</li> <li>· ...이하 생략...</li> </ul>



- '14년부터 종합평가가 의무화되었으나,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평가의 실효성 저하
  - 미평가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공모사업 지원대상 제외 등 불이익 제재로는 종합평가 이행력 확보에 한계

#### 【미평가 시설에 대한 조치】

- ▶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지자체)
- ▶ 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 【'14년도 ○○시 △△청소년수련관 세입 현황】

- ▶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특별사업보조금이 전체 수입에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자체 시설이용료 수입이 훨씬 클 경우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제외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미흡

구 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소계	시비보조금	특별사업보조금
구성비율	45%	9%	46%	34%	12%

(권익위 실태조사, '14. 9월)

- \* 사업 수입 : 시설사용료, 프로그램수입, 특별지원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등
- \* 사업외 수입 : 전년도이월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 \* 보조금 : 위탁보조금, 외부 공모사업, 국·지자체 매칭사업 등 시설보조금

-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할 뿐, 해당 시설에는 공개 의무가 없어 청소년, 보호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 제한
  - 153개 지자체 중 모든(100.0%) 지자체가 청소년조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규정 미비(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53개(100.0%))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종합평가 결과공개 (지자체·해당시설)	153 (100%)	0	153 (100.0%)	0	153 (100.0%)	153 (100.0%)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⑤ 위탁취소 법적 근거 부재 및 제재의 형평성 · 일관성 결여

- 관리권을 회수하는 위탁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제재(수탁자 자격제한, 결격기간 등)는 침익적 요소가 강해 법률에 근거가 요구되나 근거 부재
  - 또한, 위탁취소 규정 부재로 최근 3년간 위탁취소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구 분	불법행위 지도 · 점검		행정 처분				비 고
	점검횟수	적발횟수	소계	운영중지	위탁취소	벌금 · 과태료	
계	2,150	135	3	-	1(서울 동작구)	2	처분 / 적발 비율 : 2.2%
2013	772	26	2	-	1	1	
2012	763	68	1	-	-	1	
2011	615	41	0	-	-	-	

#### 관련 사례

##### 【사당청소년문화의 집('13. 12.), 위탁취소】

- ▶ 청소년단체가 아닌 동작복지재단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수탁자로 선정  
것은 부적절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불가

- 한편,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위탁계약 취소(해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결여
  - 지역에 따라 거짓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 위탁대상이 아닌 단체에 위탁 등 주요 취소사유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발생
  - “거짓 · 부정한 방법” 사유를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규정 24개소(15.7%), 임의규정 47개소(30.7%), 모두 미규정 지자체는 82개소(53.6%)로 편차를 보임

구 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 위탁취소		합 계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	×	24개소 (15.7%)
	×	○	47개소 (30.7%)
미규정	×	×	82개소 (53.6%)
합 계			153개소 (100.0%)

- 협약서의 계약해지 사유도 사정변경·자발적 의사에 의한 해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사유와는 관련성이 적어 제재효과 미약

#### 〈 ○○시 위수탁 협약서 예시 〉

제○○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모두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㉔ 위탁취소자에 대한 활동제한 부재로 비위단체 재진입 가능

- 위탁계약이 취소된 단체가 위탁취소 후에도 제한없이 수련시설 위탁운영이 가능하여 위탁취소가 일회성 효과에 그치는 등 징벌효과 미약
  - 법 제15조는 허가·등록취소에 대한 결격사유로 위탁취소에 적용 곤란
- 153개 지자체 중 150개(98.0%)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수탁자격 제한규정이 없어 비위행위 단체 사전배제 곤란(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도 148개(96.7%))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위탁 취소자	153	3	150	2	151	148
수탁 제한규정	(100%)		(98.0%)		(98.7%)	(96.7%)

※ 조례에는 없으나 지침·방침 등으로 시행 : 3개 지자체(충북 제천시 등)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 개선방안

##### ④ 종합평가 결과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탁자 부실운영 방지

-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심사 연계
  - ➔ ① <종합평가 등급> “매우 미흡”, <안전점검> 부적합(전기, 가스) 또는 D, E등급(건축, 토목) ⇒ 위탁취소 의무화
  - ② 지자체별 ‘재계약 심사기준’에 수탁자의 종합평가 관련 세부평가 항목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평가를 회피 · 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탁취소 등 제재수단 신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운영중지),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유에도 명시
- 시설 홈페이지에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학교단체, 청소년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운영 수탁자의 퇴출 유도
  - ➔ ① 소방 · 건축 · 가스 등 항목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공개
  - ② 평가 미참여, 평가제외 시설인 경우에도 해당 사실 · 사유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

#### < ○ ○ ○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예시 >

평가년도	평가기관	종합평가 등 급	안전점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2014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미흡	B	B	양호	보통	적합	부적합

##### ⑤ 위탁취소 규정 신설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탁계약 취소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
  - ➔ 비청소년단체에 위탁한 경우, 보조금 횡령 · 유용,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사고 발생 등 위탁취소 사유 신설



〈 전문가 자문 결과 〉

- ▶ 단체의 구성원이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경우 등에도 소속 개인에 대한 선임·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체에 대해 위탁취소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㉔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진입장벽 설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위탁취소된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단체의 진입 방지
  -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 보조금 횡령·유용 등으로 위탁취소된 단체(법인)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하여 비위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제○○조(위탁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2.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li> <li>3.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li> <li>4. <u>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u></li> <li>5. <u>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u></li> <li>6.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li> <li>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8.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li> <li>9.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li> <li>10.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i> </ol>



현 행	개선안(예시)
<p>&lt;신설&gt;</p>	<p>② ○○○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b>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 (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p> <p><b>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b></p> <p>① ~ ③ (생략)</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b>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b>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조 (위탁취소)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u>○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수련시설의 수탁자가 될 수 없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b>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현 행	개선안(예시)
<p>〈신설〉</p> <p>⑤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등에 있어서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 및 평가결과와 공개·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 【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p>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 ② (생략)</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u>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u>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수련시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03 수탁자 선정과정 및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 ■ 평가대상 조문

## 청소년수련시설 조례(지자체)

## 【수탁자심의위원회】

- 미제정 : 120개(78%) 지자체
- 우수 사례 : 33개(22%) 지자체

제○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

- 미제정 : 148개(97%) 지자체
- 우수 사례 : 5개(3%) 지자체

제○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 【사용료 반환】※ 사용료 유료 132개 지자체

- 미제정 : 19개(14%) 지자체
- 미흡 사례 : 103개(78%) 지자체

제○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 ○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우수 사례 : 10개(8%) 지자체

제○조(사용료 반환) (생략)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이해충돌 가능성(3-3)

#### ■ 문제점

##### ⑦ 공정 ·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규정 미흡

-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심의 ·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나 일부 지자체는 미구성 또는 형식적 운영 등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정성 저하
  - 153개 지자체 중 120개(78.4%)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이 미비(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5개(9.8%))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 · 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153 (100%)	33	120 (78.4%)	121	32 (20.9%)	15 (9.8%)

#### ※ 【참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 ▶ 위원회를 운영한 117개 지자체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이 50% 이상 16개(13.7%), 청소년 전문가 비율 30% 이하 73개(62.4%) 지자체
  - 내부인사 편중 및 청소년 전문가 부족으로 공정 · 심도있는 심의 저하

구 분	합계(비율)	0~30% 미만	30~50%	50% 이상
청소년 전문가	117개 지자체	73 (62.4%)	34 (29.1%)	10 (8.5%)
공무원	117개 지자체	55 (47.0%)	46 (39.3%)	16 (13.7%)

- ▶ 117개 지자체의 심의회 위원 총 939명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합계 (비율)	청소년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타
인 원 (비율)	939명 100%	241 25.7%	309 32.9%	113 12.0%	17 1.8%	49 5.2%	124 13.2%	73 7.8%

(권익위 실태조사, '14. 8월)



- 또한, 148개(96.7%) 지자체는 청소년조례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에 의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저하 우려 (규정 모두 없는 지자체 127개(83.0%))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해충돌방지 규정	153 (100%)	5	148 (96.7%)	25	128 (83.7%)	127 (83.0%)

### ㉔ 반환규정 미비로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 일부 지자체는 이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비용부담 및 형평성 저해 우려
  - 사용료가 유료인 132개 지자체 중 19개(14.4%)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수강료가 유료인 119개 지자체 중 20개(16.8%) 지자체 반환규정 미비

구 분	합 계 (비율)	청소년조례(A)		민간위탁조례(B)		비 고 (A·B 모두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① 사용료 반환규정	132 (100%)	113	19 (14.4%)	0	132 (100.0%)	19 (14.4%)
② 수강료 반환규정	119 (100%)	99	20 (16.8%)	0	119 (100.0%)	20 (16.8%)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또한, 반환규정이 있더라도 환급기준이 지자체별 조례마다 달라 납입료 반환여부 및 환급수준에서 편차 발생
  - 129개 지자체의 “전액환급” 기준을 보면, ① 천재지변(105개), ② 운영자의 부득이한 사유(90개), ③ 이용일 7일전 취소(21개) 등 사유별로 큰 차이가 있음

전체 (비율)	천재 지변	운영자 귀책사유	이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적용
			소계	10일	7일	5일	3일	1일	사용 직전	기타	
129 (100.0%)	105 (81.4)	90 (69.8)	77 (59.7)	3 (2.3)	21 (16.3)	20 (15.5)	8 (6.2)	13 (10.1)	8 (6.2)	4 (3.1)	10 (7.8)

※ 천재 · 지변이 있는 경우, 환급규정이 없는 24개 지자체는 전액환급 불가

#### ■ 개선방안

##### ⑦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 명시
  - ※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내부 공무원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외부 청소년 전문가 비율 확대
-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⑧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기준 정비

-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을 준용하도록 명시
  - ※ 서울시 조례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명시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규정이 없는 지자체 : 신설
- ▶ 규정 미흡한 지자체 : 개선안을 참조하여 보완·정비

### 【이용료 반환기준 예시】

구 분	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Ⅲ.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p>제○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u>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u>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u>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한다.</u></p> <p>(생략)</p> <p>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li>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li><li>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li>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li><li>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li><li>⑦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li></ul>

###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6.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광역 13, 기초 140)

####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 연장 관행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 위반 조례 개정</li> </ul> </li> <li>· 청소년활동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사전보고 의무화</li> </ul> </li> </ul>	지자체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 명확화</li> </ul> </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li> </ul> </li> </ul>	지자체	
② 부실 운영 ·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 결과와 위탁취소, 위탁기간 연장심사 연계 의무화</li> <li>- 종합평가 거부 시설운영자에 대한 제재마련</li> <li>-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li> </ul> </li> </ul>	여가부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취소근거 및 사유 규정 신설</li> </ul> </li> </ul>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취소 단체에 대해 일정기간 수탁자격 제한</li> </ul> </li> </ul>	여가부	
③ 수탁자 선정 과정 및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li> </ul> </li> </ul>	지자체	'1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및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명시</li> </ul> </li> </ul>	지자체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2014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부 록

---

부록1.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118
부록2.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144

---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개정 2011. 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 6.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의뢰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 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③ 평가 의뢰 문서를 전달받은 평가담당자는 이를 인수하고 과장까지 선람하게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 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2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기초자료·세부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세부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 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 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7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8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유·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0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1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3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24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 제25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 한다.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6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7조(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 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2010. 4.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2011. 10. 7.>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 훈령)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별표〉

##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실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 위탁 시 관련 법적 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별지 제1호서식]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 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 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1.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높음

#### ▶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2. 【제재수준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 ▶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 · 타당성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이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통제장치 포함)

### ▶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 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1	
2	

〈참고자료〉

1	
2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문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 ▶ 작성사항

〈표2-3〉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번호	위임·위탁사무의 명칭 (근거규정)	법적근거	위임·위탁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통제수단

〈추가설명〉 위임·위탁기준이 부적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범위 내용	이해관계자	통제수단

〈추가설명〉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문8.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 ▶ 작성사항

〈표3-2〉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9.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작성사항

〈표3-3〉 이해충돌가능성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 기초 평가서

### ■ 평가법령 : (...)

의뢰 사유	제·개정 목적					
	제·개정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원안동의		개선권고		참고의견	
	권고요지					

### ■ 최근 3년간 평가내역

제·개정 목적	1차				
	2차				
	3차				
	...				
개선권고	횟수	평가항목	권고내용		반영여부
기타 (현행법령 평가대상 등)					



[별지 제4호서식]

## 세부 평가서

■ 법령명 :

◁ 평가대상 조문 ▷

□ 평가기준

□ 현 황

□ 문 제 점

□ 검토결과

# 부록 1\_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관리번호	<b>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b>
1. 대상 법령	
법령명	
소관부처	
2. 평가 의견	
<p>※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수율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li> <li>• 집행기준의 적정성(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li> <li>•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li> </ul>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p>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01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12년도)

지역토착비리를 유발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3건의 개선안 마련·권고 및 정부부처 주요 위원회(45개)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두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으로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방계약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건설 하도급 공사 관련하여 중소기업체 보호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통한 하도급계약 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하도급계약 자료 일반에 비공개

- ▶ 이해관계자만 자료 공유해 부패고리 형성

##### 2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 제재 불합리

- ▶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 이익이 커 반복적 발생

##### 3 계약의무 위반자 개별법 처분 수준 불합리

- ▶ 업종별, 위반자 처분에 형평성 저하

#####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통제장치 부재

- ▶ 심사기준 변별력 부족으로 저가계약 등 만연

#### 개 선 권 고

##### 1 하도급계약 자료,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개하는 규정 마련

- ▶ 「건설법」에 계약내용 공개규정 마련
- ▶ 「계약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개 규정 마련

##### 2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 제재 강화

- ▶ '계약법령'에 입찰 참가 제한 규정 마련
  -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
  - 「건설법」에 의한 하도급 계획서 불이행자

##### 3 통보의무 위반자 등의 합리적 처분 규정 마련

- ▶ 5개 하도급사업 법령 처분 수준 형평성 제고 (건설·전기·문화재·통신·소방)

##### 4 하도급심사 실효성 강화

- ▶ 하도급계약 자료 부실 검토 감리원 벌점 부과
- ▶ 계약심사위원회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2),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포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하도급계약자료공개규정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관련	국토해양부	'13.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13. 10.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관련	지식경제부	'13. 1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문화재청	'13.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관련	소방방재청	'13. 10.
	• 「국가계약법-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관련	기획재정부	'13. 10.
	• 「지방계약법-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관련	행정안전부	'13. 10.
② 하도급계약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합리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기획재정부	'13. 04.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관련	조달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관련	행정안전부	'13. 04.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절 관련		
③ 하도급계약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합리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 관련	국토해양부	'13. 04.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시행령 별표8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13. 10.
	•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지식경제부	'13. 10.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문화재청	'13.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소방방재청	'13. 10.
④ 하도급계약심사담당성검토, 적정성심사통제장치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 관련	국토해양부	'13. 0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국토해양부	'13. 04.
	• 발주기관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관련	지방자치단체등(교육청 등 포함)	'13. 10.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지자체 기금 관련 주요 법령인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조성된 기금자금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용자하는 편법적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대상 및 절차 기준 미비

- ▶ 일반회계 재정용자 규모 과다
-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 보조금 집행기준 미비

- ▶ 일반회계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지원
-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 미비

####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미흡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미비

-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기능 미흡
-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미흡

### 개 선 권 고

####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 강화

- ▶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지자체)
-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지자체)

####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행안부)
-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준 마련 (행안부, 지자체)

####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 위원회의 회의록·의결서 작성 의무화 (행안부)
-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자체)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li> <li>-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li> </ul>	지방자치단체	'1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li> <li>-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li> </ul>	지방자치단체	'13. 04.
②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li> <li>-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li> <li>- 기금보조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리 조례</li> <li>-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보조금 포함 명시</li> </ul>	지방자치단체	'13. 10.
③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li> <li>-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li> </ul>	행정안전부	'1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기금 설치조례</li> <li>-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li> </ul>	지방자치단체	'13. 10.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 지자체 민간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지원과정에서의 법령 상 기준·절차 등이 투명·공정하지 못하여 특정단체에 치우치는 등의 보조금 지원 시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기준보조율’ 기준 마련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보조사업자 선정·지원과정의 합리적 기준 및 절차 미흡

-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미흡
- ▶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부패요인 내재
- ▶ 편중지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규정 부재

#### 2 민간보조금 세부 지원내역 파악 곤란

- ▶ 재정공시 사항 이외의 정보 미공개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성 제약

####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 ▶ 제재규정의 조례에 위임으로 인한 형평성·실효성 저조
- ▶ 위반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법령 상 여과장치 부족
- ▶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한 미온적 제재

### 개 선 권 고

#### 1 보조사업자 선정·지원과정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 ‘기준보조율’ 등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한도 설정
- ▶ ‘유사·중복사업’ 등 검증 장치 마련

#### 2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자율 통제기능 강화

- ▶ ‘민간보조사업’ 지원내역 공개 강화
  - 보조금 세부지원 내역의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한 공개 의무화

####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실효성 확보

- ▶ 위반행위 시 제재사항을 법률에 명시
- ▶ 중대 위반사유 시 당연 교부정지 및 환수사유 의무화
- ▶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
- ▶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 시 제재 부가금 부과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과정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보조금 지원기준의 명확화</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li> </ul>	행정안전부	'13. 04.
②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민간보조금 지원내역 정보공개 확대</li> </ul>	행정안전부	'13. 04.
③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제재규정의 법률 명시</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중대 위반사유 시 당연 교부정지 및 환수사유로 의무화</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제한</li> </ul>	행정안전부	'13.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시행령</li> <li>-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li> </ul>	행정안전부	'13. 04.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02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기반 마련

### ■ 정부부처 주요 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2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관련, 분쟁조정, 인·허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위원회(45개)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두는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총 45건의 개선의견)
  - 10개 부처 45개 위원회 정비 완료

〈 46개 대상과제 현황 〉

소관 부처	정비대상 위원회
국토해양부	22 중양건축위원회, 중양부동산평가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신공항 건설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친수구역조정위원회,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7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교육과학기술부	6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인정기관심의위원회,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2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정비제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2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2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변리사징계위원회
보건복지부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환경부	1 환경영향평가이의신청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정비대상 위원회를 기능별로 분쟁조정, 인·허가, 개발구역지정 등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고 각각의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 법령입안 지원



- 의뢰된 정비대상 위원회 개정령(안)에 대해 부처별 담당자가 표준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예시(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표준가이드 라인) 〉

▶ 대표적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임시이사 선임 후 당해 학교법인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내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청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여객자동차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간 교통사고 등으로 공제금 지급 및 공제 계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이해 당사자가 위원 자격으로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등 분쟁 조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
-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재심사청구를 심의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표준가이드 라인

- 주요 이해관계자
  -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진술·감정을 하거나, 처분에 관여한 위원
  - 해당 사건에 대한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 해당 사건에 원인이 된 처분 등에 관여한 위원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03 새정부 국정운영 중점분야 개선과제 추진('13년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복지, 교육, 지방 분야에서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하여 6건의 개선안 마련·권고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강화

- 민·관간 소통으로 복지서비스 중복지원을 막고 복지시설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 차단 및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8월)
  -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12년 기준 약 2조 3천 1백억원, 후원금은 968억원 규모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 고

**1 민·관간 사례관리 서비스 중복 및 정보공유 미흡**

- ▶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복 및 조정 미흡
- ▶ 정보공유 제약으로 민간 사례관리의 품질 저하

**1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민·관의 사례관리 협력 강화**

- ▶ 민·관 사례회의의 정례화, 중복대상 조정
- ▶ 민간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열람 근거 마련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불합리**

- ▶ 시설장 부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 ▶ 보조금 반환명령의 임의적 반환규정
- ▶ 시·군·구청장의 제재처분 공표 권한 부재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 ▶ 보조금 횡령 시 시설장 교체 기준 마련
- ▶ 보조금 반환명령 강행 규정화
- ▶ 시·군·구청장의 제재처분 공표 권한 부여

**3 폭력피해 노출 등 중사자 신변불안으로 복지서비스 기반 약화**

- ▶ 시설 종사자 신변보호 제도적 수단 미비

**3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급자 등의 언어·신체적 폭력 등 개선**

- ▶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대상자 정보공유를 통한 사례관리민관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li> <li>- 사례회의 정례화 및 중복 대상자 조정</li> </ul>	보건복지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li> <li>-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정보열람 요청 근거 마련</li> </ul>	보건복지부	'14. 00.
②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li> <li>- 보조금 등 횡령 시 1차 위반에도 시설장 교체하도록 처분기준 마련</li> </ul>	보건복지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li> <li>- 보조금 반환 명령을 강행규정으로 변경</li> </ul>	보건복지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li> <li>- 시·군·구청장에게 제재처분 공표 권한 부여</li> </ul>	보건복지부	'14. 00.
③ 종사자 신변보호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li> <li>-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 법적 근거 마련</li> </ul>	보건복지부	'14. 00.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정액화된 수당처럼 지급되던 임상연구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따른 의료기술 수준 향상 및 건강함 의료재정 집행 도모(8월)

※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 4천만원 집행(의사 1명당 계산 시 연평균 8백만원 규모)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임상연구비의 예산목적 불부합

- ▶ 임상연구 성과와 무관한 동일 연구비 지원
- ▶ 임상연구비 구성의 인건비 편중

#### 2 임상연구 과제선정·평가절차의 공정성 미흡

- ▶ 임상연구관리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 구성
- ▶ 모든 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동일하게 평가하는 등 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장치 미비

- ▶ 임상연구 결과공개규정이 불명확하고 공개수준이 낮아 정보공유에 한계
- ▶ 공개규정과 공개현황이 불일치

####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약

- ▶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미비
- ▶ 연구비 목적 외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개선 권 고

#### 1 임상연구 운영의 내실화

- ▶ 연구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 ▶ 임상연구비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

#### 2 임상연구 과제 평가절차의 공정성 강화

-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으로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전문성 확보

####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확대

-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 명확히 규정
- ▶ 홈페이지에 임상연구 최종보고서 공개

####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자 연구비 환수 및 연구참여 제한
- ▶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목적 사용 등 부당한 연구자 연구참여 제한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9개), 경찰병원, 기획재정부(참고)

-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임상연구 제도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 및 학술지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li> <li>임상연구비의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li> </ul>
임상연구 과제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연구관리위원회(평가단)의 외부위원 구성 확대</li> <li>임상연구관리위원회(평가단) 위원의 전문성 확보</li> </ul>
임상연구 결과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장소) 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li> <li>(공개대상) 임상연구 최종보고서</li> </ul> </li> </ul>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논문 표절 등 연구비 환수 및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li> </ul> </li> <li>부당한 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 목적 외 사용,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일정기간 연구 참여 제한</li> </ul> </li> </ul>

- 조치기한 : '14. 8월



##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위원 구성방식을 개선, 운영위원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12월)

※ 16개 교육청 관하 461개 학교에서 '08~'11. 9월 동안 운영위원 등이 소유한 업체와 총 5,229건(합계 금액 79억원)의 부당 수의계약 체결(감사원 감사, 2012. 5월)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공정성을 저해하는 운영위원 구성

- ▶ 학교측의 추천권 행사로 공정성 저해
- ▶ 위원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2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불합리

- ▶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 관련 규정 미약
- ▶ 지위남용 위원 자진사퇴 시 제재수단 전무
- ▶ 심의 관련 자료 확보 규정 미비

#### 3 자격상실 위원 활동제한 전무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장치 미흡

- ▶ 자격상실된 지위남용 위원에 대한 선출자격 제한규정 불비
- ▶ 학교장의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개선 권 고

#### 1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 ▶ 교원위원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 ▶ 위원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2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 ▶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 만료 시 제재 방안 마련
-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 3 운영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기간 신설
- ▶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17개 광역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공 정 한 업 무 수 행 을 위한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li> <li>- 현행 교원위원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li> </ul>	교육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위원외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li> </ul>	시·도 교육청	'14. 00.
② 지위남용행위 자 격 상 실 의 무 화 및 자료확보수단 마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li> <li>-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li> </ul>	교육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li> <li>-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만료 시 제재방안 마련</li> </ul>	교육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li> </ul>	시·도 교육청	'14. 00.
③ 운 영 위 원 자 격요건 강화 및 심 의 · 자 문 절 차 이행력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교육법</li> <li>-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기간 신설</li> </ul>	교육부	'14.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li> </ul>	교육부 시·도 교육청	'14. 00.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 국가연구개발사업(R&D)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환수 등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수행 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연구비 예산의 낭비 방지 및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12월)

※ '12년 기준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연구과제 선정 과정 불투명

- ▶ 평가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미흡
- ▶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상존
- ▶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 미흡

####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불명확

- ▶ 연구원 참여율 공유 미비에 따른 인건비 낭비
- ▶ 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모호
- ▶ 연구장비 등록·관리 소홀로 예산 낭비

#### 3 연구비 정산 실효성 미흡

- ▶ 법령에 근거없는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부실
- ▶ 위탁정산기관 독립성·책임성 담보 장치 미비

#### 4 환수·제재대상 및 수준 불합리

- ▶ 연구개발비 환수규정 불명확
- ▶ 환수금 임의적 감면, 지연납부
- ▶ 동일부정행위, 제재대상·수준 상이

### 개선 권 고

#### 1 연구과제 선정 공정성 강화

- ▶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 ▶ 과제선정 평가의 공정성 강화
- ▶ 권리구제절차 명확화·체계화

####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명확화

- ▶ 연구원 참여율 통합 관리·활용
- ▶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명확화
- ▶ 연구장비 체계적 등록·관리체계 구축

#### 3 연구비 정산 책임성 강화

- ▶ 위탁정산 제도화·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 독립성 강화 및 제재규정 마련

#### 4 환수·제재규정 합리화

- ▶ 연구개발비 환수·제재규정 명확화
- ▶ 환수금 회수 감면·규정 구체화
- ▶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 법령	권고기관	조치기한
① 연구과제 선정 투명성 강화	•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 평가위원 pool 구성의 공정성 제고	미래창조과학부	'14. 12.
	•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및 공무원 의제	미래창조과학부	'14. 12.
	•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14. 12.
② 연구 개발 비집행·관리기준명확화	•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 연구원 참여율 통합관리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14. 12.
	•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행정규칙 -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합리화	대상기관	'14. 12.
	• 기본법령(법률+공동관리규정) - 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14. 12.
③ 연구 개발 비정산책임성강화	•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 정산업무 위탁 근거 법령에 마련	대상기관	'14. 12.
	•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대상기관	'14. 12.
④ 연구 개발 비환수·제재합리화	•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 연구비 환수규정 명확화	대상기관	'14. 12.
	• 기본법령 및 각 부처 개별법령 - 연구비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대상기관	'14. 12.
	• 기본·개별법령 및 행정규칙 - 연구부정행위,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대상기관	'14. 12.



## ■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 모든 지방의회의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정부3.0시대에 맞춰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8월)

※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나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개선권고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의사중계 근거규정 불비

- ▶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의사중계 범위, 방법 등 자체 의사중계 근거 부재
- ▶ 회의록, 방청 등 기존 회의공개 방식에 치중

#### 2 의사중계의 본회의 편중

- ▶ 의회에 따라 회의를 중계하지 않거나, 중계하더라도 대부분 본회의에 그침

### 개선 권 고

#### 1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

- ▶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와 방법을 의회별 회의규칙에 명시
- ▶ 공개방식을 다양화

#### 2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 지방의회 모든 회의와 청문회 등 중요사항을 중계 대상으로 규정

## 부록 2\_ '12 ~ '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16개 광역 자치단체 의회(경상남도 의회 제외)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 법령	권고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지방의회 의사중계 확대·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별 회의규칙</li> <li>-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li> <li>-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등 세부기준 마련</li> </ul>	16개 광역의회 (안전행정부)	'14. 02.





### ■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보조금과 교육청 예산 중 복지원 방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12월)

※ '13년 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조 4,367억원 규모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및 개선권고 사항(요약)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 1 보조금 지원

- ▶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 지자체 제재 미비
- ▶ 보조금지원 제한기준인 '인건비' 개념 불명확

##### 2 전출금 지원

-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도→교육청) 방법 규정 미비로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
- ▶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전출 세목간 (보통세↔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산정 방법 모호
- ▶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 여부 모호

##### 3 위원회 운영

-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 개선 권 고

##### 1 보조금 지원

- ▶ 제한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마련 또는 실효성 없는 현행 제한 규정 삭제
- ▶ '인건비'의 개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2 전출금 지원

-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기·시기별 규모 등 구체적인 전출방법 마련
- ▶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전출 세목에 대한 산정방법 명확화
- ▶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 여부 명확화

##### 3 위원회 운영

- ▶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참고 2\_ '12~'13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사례

### ○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류	개선권고 관련법령	대상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제한규정 삭제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5. 12.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인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4. 12.
전출금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광역지자체 관련 조례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 명문화	교육부 광역지자체	안전행정부 교육청	'14. 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기준 명확화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지자체	'14. 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여부 명확화	교육부	안전행정부 광역지자체	'14. 12.
위원회 운영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지방자치 단체	교육부	'14. 12.

### ■ 참고의견 사항

분 류	참고의견 관련법령	대상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기타 참고 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 규모 설정 검토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15. 12.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포괄편성 금지 명문화 검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 단체	교육부	'14. 07. '14. 12.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검토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목 통합·운영방안 마련 검토	안전행정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14. 07.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단, 관련 부처·지자체 등 합의가 필요한 개정사항은 2년 이하